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3조의3제2항 관련)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목재교육프로그램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 또는 그 세부 교육내용의 어느 하나 이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내용	세부 교육내용
가. 일상생활 속 목재	1) 목재의 유용성 2) 목재 이용 정책과 제도 3) 생활 속 목재문화
나. 목재의 이해	1) 목재의 성질 2) 목재의 가공 및 이용
다. 목재와 환경	1) 목재자원의 효율적 순환이용 2) 목재이용과 탄소저장량 3) 기후변화와 목재이용
라. 목재와 목공	1) 목재제품의 제작 2) 목공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3) 일상생활에서 목공의 활용

2.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

영역	항목	세부 구성기준
가. 교육프로그램	1) 구성	○ 프로그램의 제목, 목적 및 목표, 기대효과 ○ 프로그램의 개요(장소, 인원, 대상 및 시간을 포함한다), 준비물, 진행 과정, 진행의 유의사항 ○ 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은 교육 대상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2) 운영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 교육 대상 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등 홍보계획
	3) 평가	○ 프로그램 평가계획(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체계
나. 교수요원	자격	○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
다. 교육활동 환경	1) 공간 및 설비	○ 교육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장 등의 공간과 안전한 시설의 확보 또는 그 계획

		○ 교육 프로그램 및 인원 에 맞는 공구 및 설비 확보
	2) 안전관리계획	○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을 포함한다)
	3) 위생관리	○ 식사 및 숙박 시설이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도록 계획
라. 활동기록 관리	활동기록관리	○ 교육활동 기록의 유지 및 관리체계
마. 숙박시설 관리(숙박교육인 경우)	숙박시설 관리	○ 교육참가자 수에 맞는 충분한 숙박 공간의 확보 ○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 지정 ○ 시설 및 교육생 안전관리계획

비고

1. 교육프로그램은 2시간 이상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2. 교육프로그램은 활동(체험, 해설, 놀이, 토론, 조사 등을 말한다)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활동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3. 교재 교육프로그램은 가목1)의 세부 구성기준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